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. 3. 23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3월 10일

나. 발 의 자: 김길자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3. 21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장애·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통합놀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(안 제2조)
- 통합놀이터 설치가능 조항 신설(안 제4조)

○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○ 본 조례안은 장애·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는 ‘어린이공원’ 정의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통합놀이터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는 장애·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장애·비장애 어린이가 하나되어 함께 어울려 뛰어 놀 수 있는 통합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놀이터 정의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통합놀이터는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어울려 소통하면서 놀 권리를 실현해 가는 공간이며, 장애·비장애 경계 없이 누구나 물리적 제약을 느끼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7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2년 3월 일

발 의 자: 김길자 의원 외 3명

## 1. 제안이유

장애·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통합놀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(안 제2조)

나. 통합놀이터 설치가능 조항 신설(안 제4조)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2. 3. 8. ~ 3. 14.)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  
나목”을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”  
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통합놀이터”란 장애·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 
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및 어린이놀이터의”를 “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  
호 중 “각종시설”을 “각종 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 
신설한다.

- ④ 구청장은 장애·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 
면서 도전과 모험,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  
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8조 중 “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”를 “어린이공원 등”으로, “범위  
안에서 지원 할”을 “범위에서 지원할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확보하여야한다”를 “확보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어린이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----- 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통합놀이터”란 장애·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.</p>
<p>제4조(관리·지원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·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관리·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어린이공원 등의 <u>각종시설</u> 및 위생 점검 지도</p>	<p>제4조(관리·지원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각종 시설</u> -----</p>

